

서울특별시종로구1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1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2004년 6월 2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가.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회수에 관계없이 1차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조 제1항).
-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1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안 제9조 제2항, 제10조 2항).
- 다.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함(안 제9조 제3항).
- 라.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 일로부터 7일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11조).
- 마.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절차 등을 기술함(안 제14조 내지 제17조).
- 바.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 행위와 포상금지급 대상행위를 구분하여 국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 컵, 소형 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5조).
- 사. 신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부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함(안 제17조).

III. 검토의견

1. 조례 제정 배경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는 1회용품 등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로 인한 국토를 보전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게 1회용품의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및 재활용제품·판매매장의 설치·운영 등에 의무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상업소수가 많은데 비하여 단속해야하는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일부 사업자가 법망을 피해가면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심리가 팽배하여 다른 업소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바, 주민참여에 의한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운영하는데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2003. 8. 환경부로부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참고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2004. 6. 22.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 구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구를 포함한 14개구가 되겠으며, 또한 조문 구성은 (안 제2조) 정의를 포함한 7장, 23개 조문과 2개항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동 제정조례안의 세부 조항별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별표, 안 제15조 관련)
안 제15조 관련 별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서 2호. 바목.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와 2호. 사목.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는 부과하나 포상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환경부 지침에 따라 각각 3만원을 규정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적극적인 주민홍보 대책 강구

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인 타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조례 공포 시행 3일 이내에 100건 이상의 위반사례가 접수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문신고꾼(일명 : 일파라치)들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일정지역을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행 초기에는 대다수의 위반 업소에서 조례가 시행되는지 모르고 적발되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내 해당업소에 안내전단지를 제작·배부하는 등 이에 대한 홍보대책을 강구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부칙 제1항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례 내용은 해당 사업자 및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충분히 주지시킬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2개월 정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 조례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부칙 제2항에서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의재활용 촉진에관한조례중 제7조 내지 제13조를 삭제한다. 라고 다른조례의 개정을 두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먼저 부칙에서 타 조례 개정의 효용성을 살펴보면 ①관련조례의 동시적 정비될 기할 수 있고, ②관련조례를 일괄 심의하게 되므로 심의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으며, ③입법절차상의 번잡과 비능률을 피함으로써 입법경제를 기하는 측면에서 입법기술상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 동조례 7개조문을 삭제하여 이 조례에 통합하는 경우에 4개 조문만 남게 되어 기존조문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향후 동 조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IV.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 (2002. 7. 28)
-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개정 (2002. 7. 28 환경부예규 제232호)
- 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시행지침 (2003. 9. 3)

(별표 1)

자치구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조례제정 현황

(2004. 6. 22 현재)

구 별	추진중	조례제정 완료	비고
총 계	11	14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